

설문조사를 통한 소음·진동규제법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An analysis of the status and problems for the noise & vibration control laws by questionnaires

손정곤[†] · 김정태* · 이지영**

Son, Jeong-Gon, Kim, Jeong-Tae and Lee, Ji-Young.

Key Words : the noise & vibration control laws (소음진동규제법), questionnaire(설문조사)

ABSTRACT

In this study, analyze the status and problem of a noise and vibration control laws of it through the questionnaire. The method of survey was made by questionnaires which were the civil worker 138 persons and civil servant 132 persons. Based on this survey, we suggest a improvement of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laws.

1. 서론

소음·진동이란 사람이 생활하기 위하여 집을 짓거나 통행을 하거나 또는 생활품을 만들거나 상행위를 하는 과정의 부산물로 얻어지는 여러 가지의 역효과 중 하나로 우리는 이것을 공해라 부른다.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제도로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소음·진동에 대한 것이 “소음·진동규제법”¹⁾(이하 편의상 “소진법”이라 함)으로, 이 법이 제정된 것은 1990년 1월 기존의 환경보전법 중 소음·진동 조항을 분리하여 개별법으로 정비 하고 이후 23회의 제·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도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레 변하며 그때 마다 그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마련인데 이러한 목적으로 소진법의 현황을 살펴보고 또한 이해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목적을 소음·진동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여 이들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우선 공해를 발생시키는 배출시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하였으며, 다음은 이들 제도를 관리, 감독하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의견과 마지막으로 소음·진동의 피해를 저감시키는 전문가 등을 대상

으로 제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로가 처해있는 위치에서 소음·진동이라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지금보다 나은 제도 개선안을 정부 관련부처에 건의 하여 '08년도 관련법의 전문 제·개정에 반영토록 하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시간적인 한계로 설문조사의 대상 인원이 많지 않아 조사 결과의 보편성이 우려된다.

설문지는 민간분야 및 공공분야 종사자별로 나누어 작성되었으며, 민간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내용은 조사대상에 대한 통계처리를 위해 설문 4개 항목과 법 관련 설문 20개 항목, 분쟁 조정에 대한 설문 9개 항목, 마지막으로 측정 및 방지시설에 관한 설문 11개 항목 등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공공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은 통계처리를 위한 설문 4개 항목, 소음·진동 관리일반에 대한 설문 7개 항목, 교통소음·진동 관리에 대한 설문이 3개 항목, 생활소음·진동 관리에 대한 설문 3개 항목 그리고 소음·진동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에 대한 설문이 2개 항목 등으로 구성 하였다.

2. 설문조사의 개요

2.1 조사기간

'07. 09. 01 ~ '07. 11. 30

2.2 조사대상 분야 및 인원

2.2.1 민간분야

[†] 교신저자, (주)동일기술공사

E-mail : dwhand@hanmail.net

Tel : (02) 2163-6585, Fax : (02) 2163-6589

* 홍익대학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 환경부 생활환경과

(1) 인원 : 138명

- 배출시설업체 : 112명 (주로 환경행정, 배출시설 업무)
- 기술사 : 18명 (주로 설계 및 방지시설 업무)
- 교수, 연구원 : 8명 (주로 소음, 진동이론 및 대책연구)

(2) 근속년수

- 환경분야 : 0~4년:33%, 5~9년:17%, 10년이상:50%
- 소음진동분야 : 0~4년:34%, 5~9년:16%, 10년이상:50%

(3) “소음·진동” 분야가 업무에 차지하는 비중

- 0~33%:67%, 34~66%: 15%, 67%이상: 18%

2.2.2 공공분야

(1) 인원 : 132명

-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외 30여개 시군구) : 121명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9명
- 지방자치단체 및 분쟁조정위원회 (중복해당) : 2명

(2) 근속년수

- 환경분야 : 0~4년:45%, 5~9년:14%, 10년이상:41%
- 소음·진동분야 : 0~4년:85%, 5~9년:10%, 10년이상:5%

(3) “소음·진동” 분야가 업무에 차지하는 비중

- 0~33%:60%, 34~66%: 26%, 67%이상: 14%

3. 설문조사 내용

3.1 민간분야

Table 1. 설문조사 항목 (민간분야)

구분	질문 내용
소음 진동 규제법 관련 설문	- 소음·진동 분야와 업무연관성
	- 소음·진동 분야의 관리 및 운영 만족도
	- 환경관련 법 내용 인지도
	- 소진법 적용대상 및 관리내용 인지도
	- 소음·진동 보호범위에 재산권 포함 여부
	- 발생원별 환경관리 우선 대상
	- 교통소음 환경기준 만족도
	- 공장소음 환경기준 만족도
	- 생활소음 환경기준 만족도
	- 항공기소음 환경기준 만족도
	- 도로소음 저감을 위한 합리적 방법
	- 철도소음 저감을 위한 합리적 방법
	- 공장소음·진동 관리규제의 합리성
	- 공장소음 저감을 위한 합리적 방법
	- 공사장소음·진동의 생활소음·진동분야에서의 분리화 타당성
	- 공사장 주변 소음·진동 환경기준 만족도
- 공사장 주변 소음표시전광판설치 필요성	

(계속)

분쟁 조정 관련 설문	- 국내 소음·진동 분쟁조정과정의 합리성
	- 분쟁신청인 주장의 타당성
	- 피신청인 주장의 타당성
	- 분쟁조정기관 판단의 적정성
	- 공사장 소음·진동 분쟁 조정의 합리성
	- 공장 소음·진동 분쟁 조정의 합리성
방지 시설 관련 설문	- 생활 소음·진동 분쟁 조정의 합리성
	- 방지시설 설치 필요성
	- 방지시설 설치 동기
	- 방지시설 미설치 사유
	- 방지시설 관리상의 문제점
	- 방지시설 설치 후 효과 및 미관 만족도
방지 시설 관련 설문	- 선호 방지시설 (발생원, 경로, 수음측 중)
	- 방지시설 설치방법의 합리성

3.2 공공분야

Table 2. 설문조사 항목 (공공분야)

구분	질문 내용
소음 진동 관리 일반	- 소음·진동 분야의 관리 및 운영 만족도
	- 발생원별 환경관리 우선 대상
	- 교통소음 환경기준 만족도
	- 공장소음 규제기준 만족도
	- 생활소음 규제기준 만족도
	- 환경정책기본법 상 항공기 및 철도소음 기준 신설 타당성
- 소음·진동분야 중 국가적 지원 우선순위	
교통 소음 진동 관리	- 도로소음 저감을 위한 합리적방법
	- 철도소음 저감을 위한 합리적방법
	- 현 교통소음·진동 관리체계의 합리성
공장 (배출 시설 설치) 소음 진동 관리	- 현 공장소음·진동 관리체계의 합리성
	- 현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측정방법의 적정성
	- 공장소음의 지역별·시간대별 구분 관리 타당성
	- 현 소음·진동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제 폐지의 타당성
- 공사장소음·진동의 생활소음·진동분야에서의 분리화 타당성	
생활 소음 진동 관리	- 공사장소음·진동의 생활소음·진동분야에서의 분리화 타당성
	- 공사장 소음·진동의 환경기준·관리체계의 강화 및 세분화 필요성
	- 공사장 주변 소음표시전광판설치 필요성
소음 진동 기반 시설 구축 관련	- 소음지도 작성 권고규정 도입시 우선 적용분야
	- 소음지도 작성 권고규정 도입시 문제점

4. 설문조사 결과

4.1 민간분야

4.1.1 소음·진동규제법 일반

관련법과의 업무 연관성은 교수 및 연구원 집단이 배출시설업체 종사자에 비하여 단연 높게 나타났으며 (Fig.1), 현 소음·진동규제법의 관리 및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배출시설업체 종사자의 경우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으나, 교수 및 연구원 집단에서는 그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Fig.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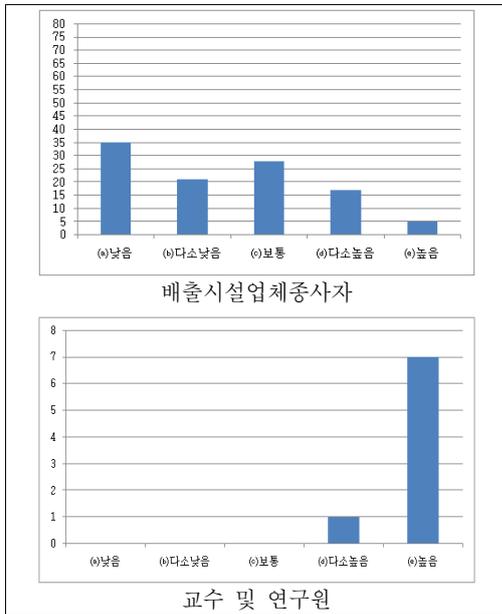


Fig. 1 업무에서 소음·진동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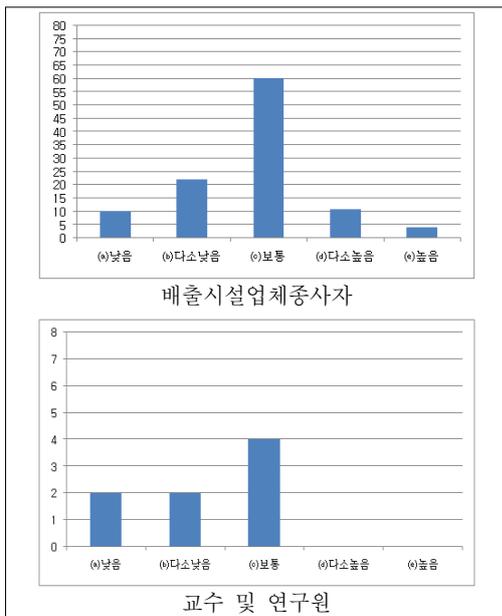


Fig.2 소음·진동 분야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한 만족도

또한 현 소음·진동규제법의 경우 국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제공(신체권)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방향은 재산권 행사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Fig.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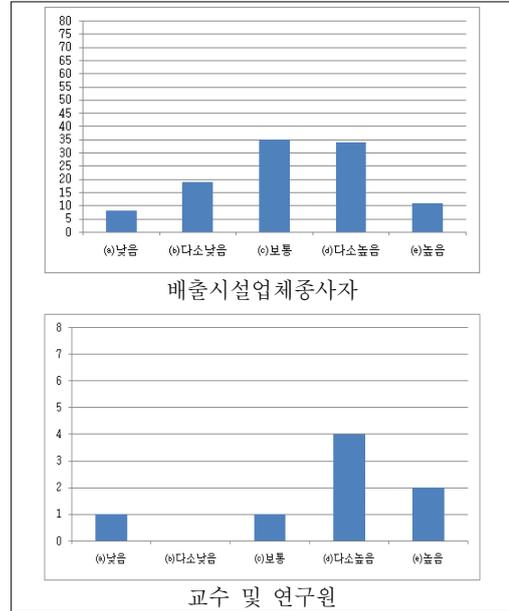


Fig.3 개정방향에 재산권 행사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

4.1.2 환경기준

발생원별 환경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Fig.4와 같이 다소 낮거나 보통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소음·진동 발생원 중 가장 심각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전 집단에 걸쳐 “교통소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차순으로 배출시설업체 종사자는 항공기소음-생활소음-공장소음 순을, 기술사 및 전문가 집단은 생활소음-항공기소음-공장소음이라고 응답하였다. (Fig.5)

4.1.3 소음 발생원별

도로소음·진동의 합리적 저감 방안으로는 “도로설계 및 배치단계에서 부터의 접근” 과 “소음원 규제” 로 응답하였으며 (Fig.6), 철도소음·진동에 대해서는 도로에 비하여 “방음시설투자” 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Fig.7)

공장소음의 경우 타 발생원에 비하여 합리적으로 규제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Fig.8)

공공장 소음의 경우 발생빈도 및 민원발생 급증 등을 감안하여 생활소음 항목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공사장 주변의 소음표시전광판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문대상 전 집단에 걸쳐 나타났다. (Fig.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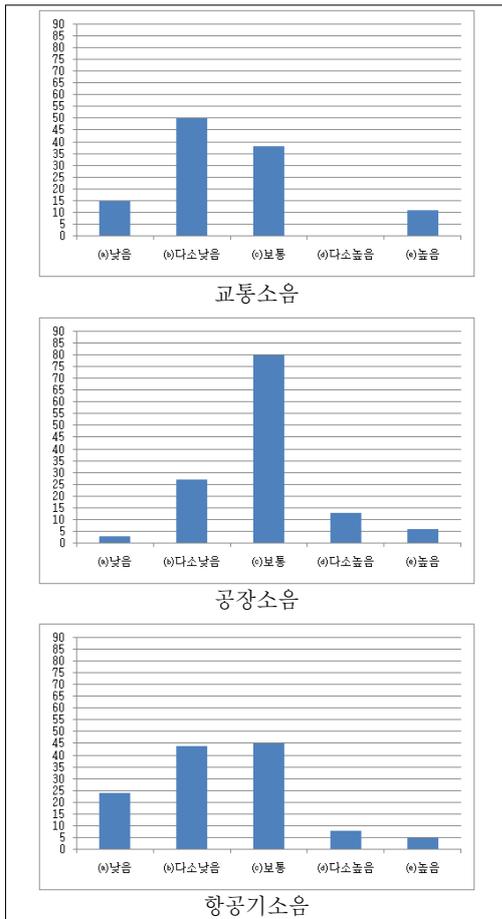


Fig.4 발생원별 환경기준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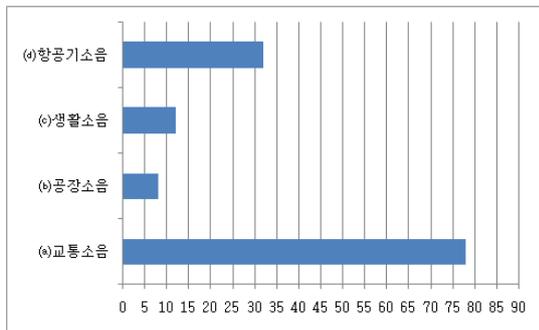


Fig.5 소음·진동문제가 가장 심각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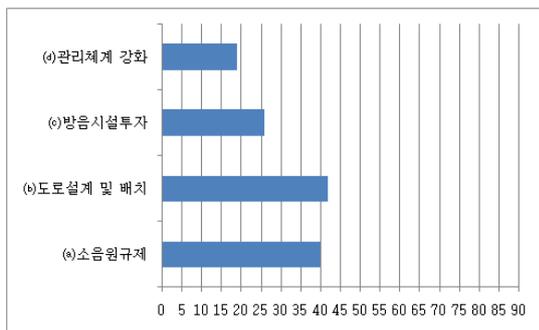


Fig.6 도로소음 저감을 위한 합리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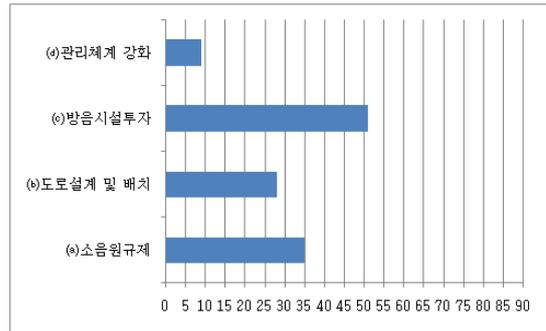


Fig.7 철도소음 저감을 위한 합리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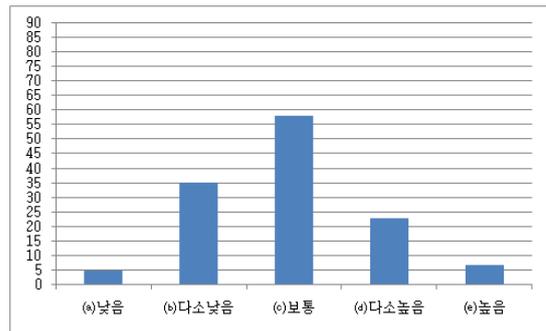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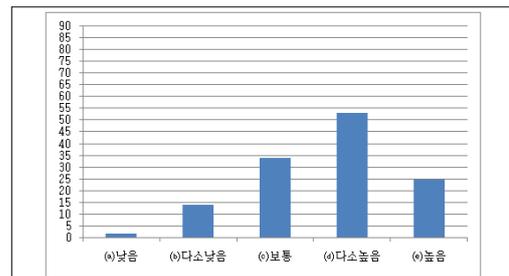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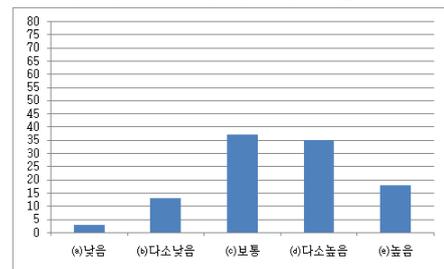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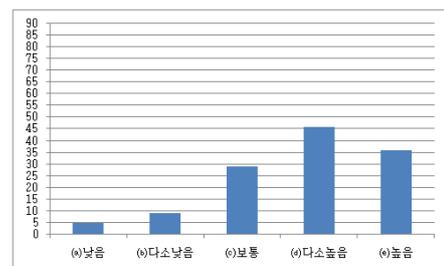
Fig.8 공장소음·진동의 합리적 규제 여부



공사업장 소음·진동 관리 강화 필요성



공사업장소음의 생활소음항목에서 분리 타당성



공사업장 주변 소음표시전광판 설치 찬성 여부

Fig.9 공사업장 소음·진동 관련 설문 결과

4.1.4 분쟁조정

민간분야 설문대상자들은 국내의 소음·진동관련 분쟁 조정과정 및 조정기관의 판단이 적정하다고 답변하였으나, 공사장 소음·진동 관련 분쟁에서는 전반적인 결과에 비하여 조정결과의 합리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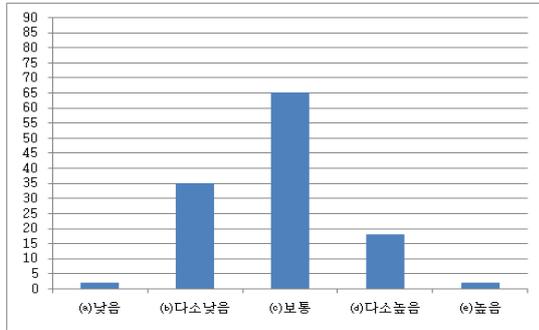


Fig.10 분쟁조정 결과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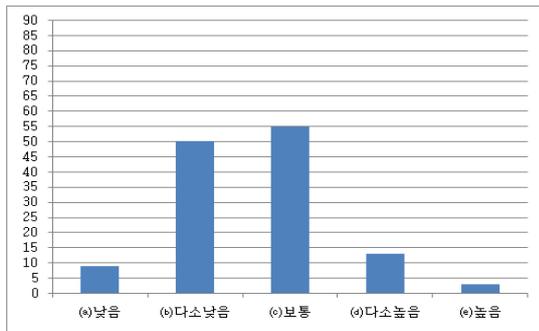


Fig.11 공사장 관련 분쟁조정 결과 적정성

4.1.5 방지시설

소음 방지시설의 필요성 및 효용성을 묻는 질문에는 “보통” 또는 “다소 높음” 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또한 소음 배출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 동기 및 미 설치시 그 사유를 묻는 질문에는 각각 “법적 규제 및 민원 발생” 과 “비용문제” 가 주를 이루었으며, 방지시설 설치 후 관리상의 문제점으로는 “관리비용 및 관리 인력 부족” 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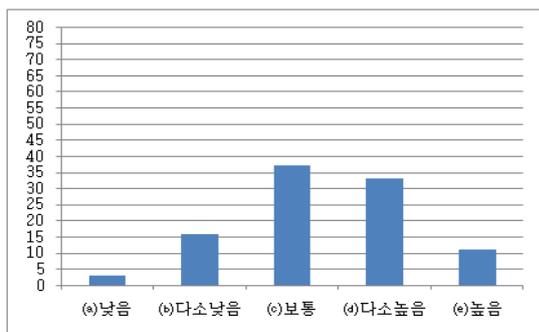


Fig.12 소음방지시설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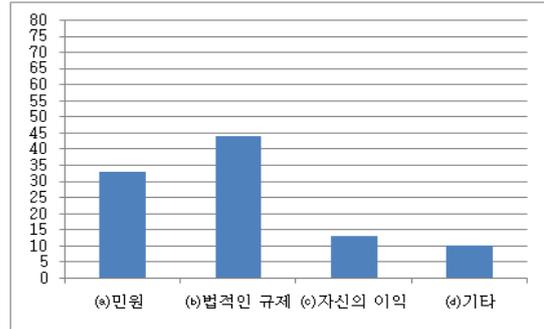


Fig.13 소음방지시설 설치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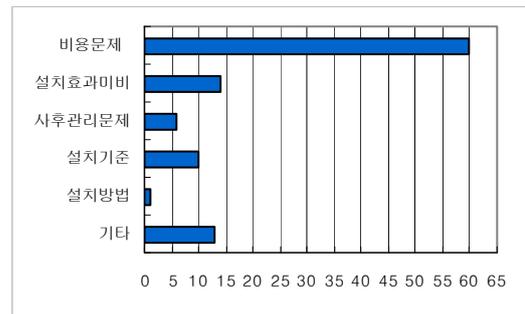


Fig.14 소음방지시설 미설치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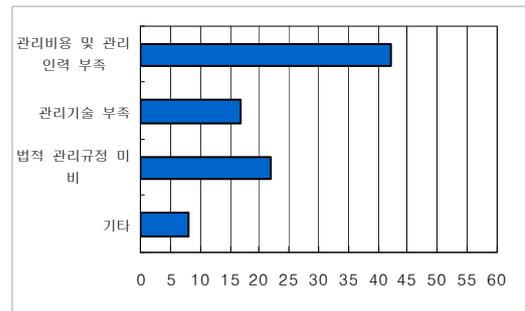


Fig.15 방지시설 관리상 문제점

4.2 공공분야

4.2.1 소음·진동 관리 일반

소음·진동 분야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거나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불만” 및 “매우 불만”이 34명으로 전체의 약 26%로 나타났다. 주요 불만 사유로는 소음·진동 관련 민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현행 소음·진동 관리에 투입되는 인적, 물적 자원 및 업무지원 여건은 열악한 점으로 나타났다.(Fig.16)

7개의 소음발생원 (교통, 화성기, 항공기, 공장(배출시설 설치, 배출시설 미설치), 공사장, 사업장(생활)소음) 중 현재 가장 심각한 발생원을 묻는 질문에는 1순위가 공사장소음이었으며, 차순은 사업장소음과 교통소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별 생활사회 환경 등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주요 소음발생원의 순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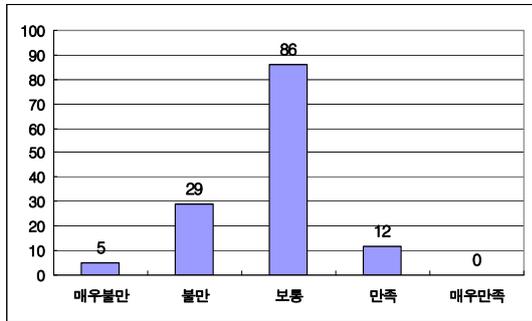


Fig.16 소음-진동분야 관리 및 운영현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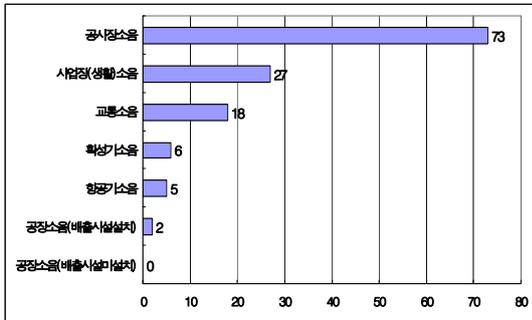


Fig.17 소음-진동분야 관리 및 운영현황 만족도

Table 3 소음발생원별 심각순위 (단위:명)

순위	교통	공장 (배출 시설 설치)	공사장	사업장 (생활)	화성기	공장 (배출 시설 미설치)	항공기
1	18	2	73	27	6	0	5
2	14	6	37	52	14	1	4
3	32	11	10	24	25	13	8

현재의 환경기준 만족도에 대한 응답은 교통 및 공장 소음-진동 기준의 경우 보통이거나 다소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엄격한 기준으로 인하여, 형식적인 민원을 유발한다는 이유 등으로 만족도가 타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환경정책기본법 상 환경소음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는 항공기 및 철도소음의 경우 새로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응답자가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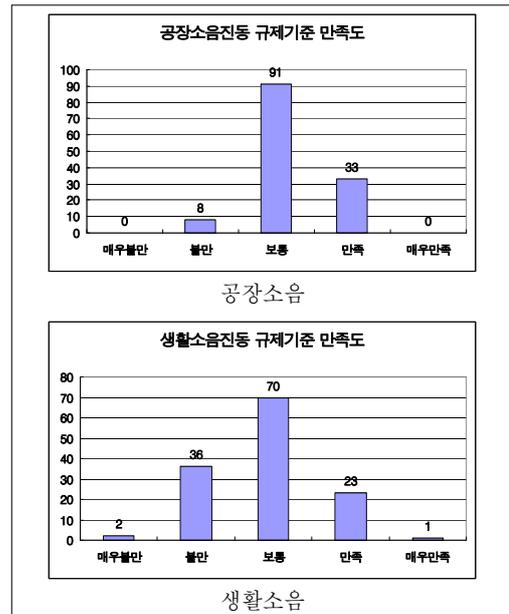


Fig.18 환경기준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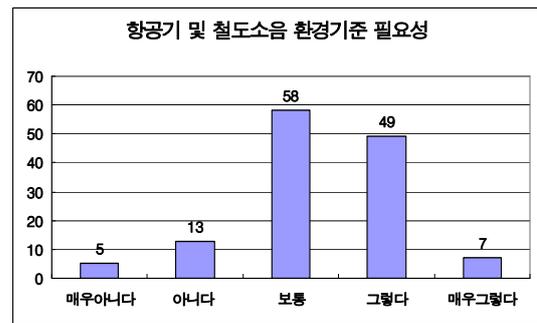


Fig.19 환경정책기본법상 항공기 및 철도소음 환경기준 필요성

4.2.2 교통소음-진동 관리

도로 및 철도소음 저감 방안 중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대부분은 도로 및 철도의 설계 및 배치단계에서 부터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방음시설에 투자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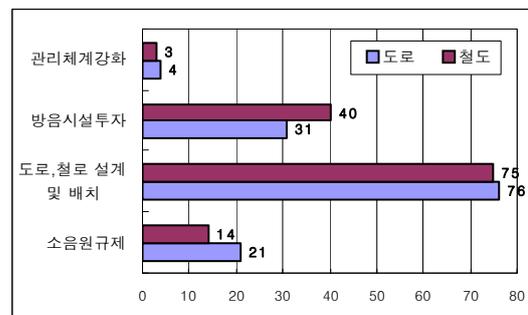


Fig.20 교통소음 저감방안 우선순위

또한 현재의 교통소음진동 관리체계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보통수준이거나 다소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며,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교통소음 규제지역의 실질적 적용이 곤란하며, 실제 지정된 규제지역 역시 소음 민감지역이 아닌 곳이 많다” 라는 의견 등이었다.

4.2.3 공장(배출시설설치) 소음·진동 관리

현재의 공장 소음진동 관리 및 규제 합리성에 대한 설문은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비합리적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소음배출시설의 허가 및 신고 대상에 대한 실질적 조치의 차이가 없음”과 “공사장 소음 민원의 증가로 공장 소음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실정”임을 지적했다.

또한 현행 공정시험법 상의 공장소음 측정방법의 문제점으로는 1순위가 “측정시 기계의 가동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웠다” 등의 이유로 “가동상태 조건”이었으며, 차순으로 “소음 측정위치 선정”과 “보정치 산정의 복잡함”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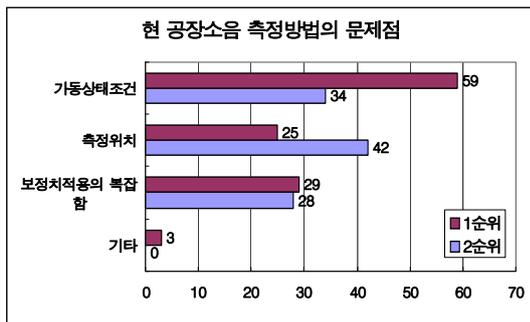


Fig.20 현 공장소음 측정방법 문제점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의 소음을 생활소음규제기준과 같이 지역별·시간대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가 합리적이라고 응답하였다. (Fig.22)

또한 현재의 소음·진동 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소음규제기준만 준수하면 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많은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나타내었다.

신고 및 허가제도 폐지를 찬성 이유로는 배출시설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소음으로 인한 생활상의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배출시설 설치신고의 유무는 큰 의미가 없음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 제도가 폐지될 경우 사실상 소음·진동 배출사업장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발생원에 대한 사전예방 및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현 제도의 유지가 합리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도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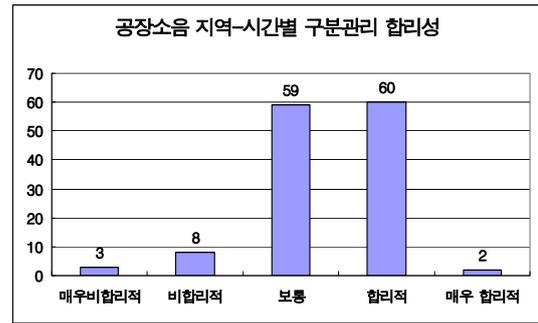


Fig.21 현 공장소음 지역별-시간대별 구분 관리 합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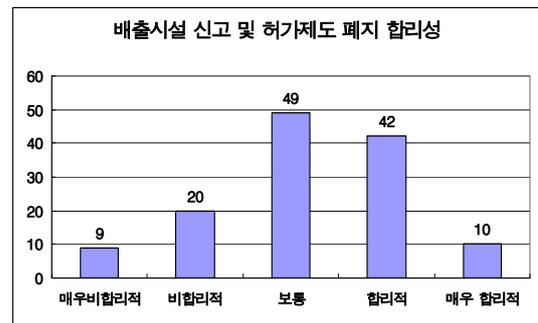


Fig.22 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제도 폐지 합리성

4.2.4 생활 소음·진동 관리

현재 생활소음·진동 분야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는 공사장 소음·진동을 따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대부분의 응답자가 찬성하고 있으며, 공사장 주변 환경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방안 역시 긍정적인 응답이 다수로 조사되었다.

일정 규모이상의 대형 공사장에 소음표시전광판 설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응답자의 경우 공사 시행자와 주민들과의 불신으로 또 다른 민원 발생 가능성을 예로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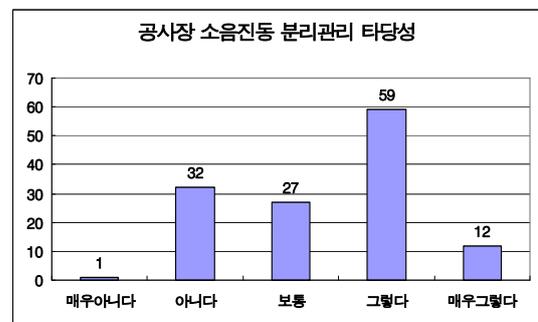


Fig.23 공사장 소음·진동 분리 관리 타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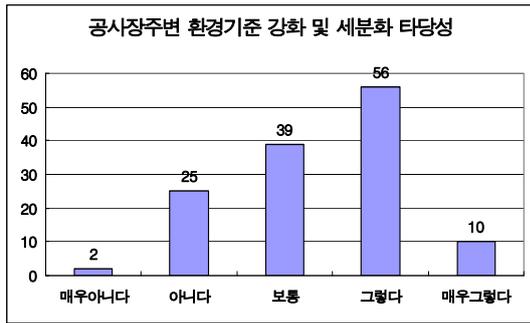


Fig.24 공사장 주변 환경기준 강화 및 세분화 관리 타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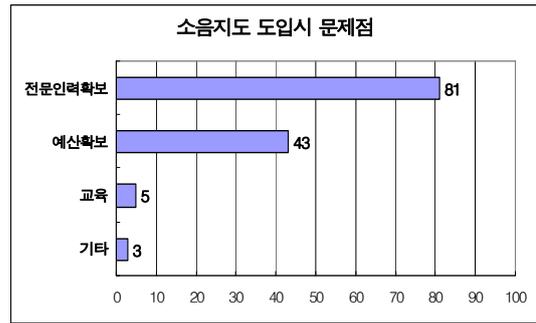


Fig.26 소음지도 도입시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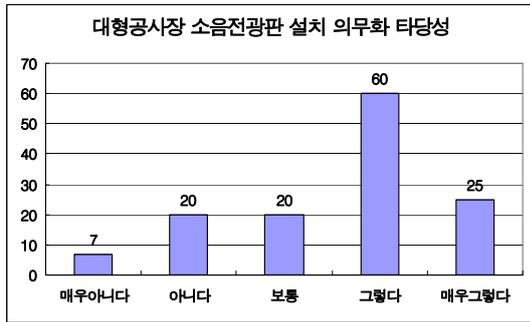


Fig.24 공사장 주변 환경기준 강화 및 세분화 관리 타당성

4.2.5 소음·진동 기반시설 구축 관리

환경부에서 도로·철도·항공기 소음 등으로 인한 소음 노출인구 파악 및 효율적인 소음저감 대책 수립을 위하여 2006년부터 추진 중인 소음지도 작성과 관련²⁾하여, 소음지도 w도 작성 권고안이 시행 될 경우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소음지도가 도입된다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문 인력 및 예산 부족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조사되었으며, 기타 단순 권고사항일 경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소음지도의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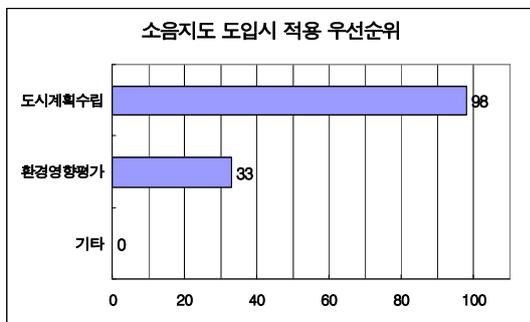


Fig.25 소음지도 도입시 적용 우선순위

4.2.6 기타사항

앞서 제시한 설문 항목에 대한 객관식 응답 외에 소음진동분야의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되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실제 생활에 영향을 받는 피해의 정도보다 과도한 보상을 목적으로 제기되는 공사장 소음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이 절실함.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쉽게 소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건설공사장 소음 관리업무의 경우 환경관련 부서가 아닌 준공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건축관련 부서에서 담당하여야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 임.
- 야간 소음에 대한 민원을 처리할 전담반의 구성 및 지원 확대
-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저소음·저진동 공법, 제품의 개발 지원 및 보급의 확대
- 환경부와 지자체의 환경부서간의 피라미드형 조직을 구성하여, 원활한 정보교환과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 등이 있었다.

5.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1 민간분야

4.1에서 제시한 민간분야 종사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Table.4와 같다.

5.2 민간분야

4.2에서 제시한 전국 30여개 시군 지자체 및 분쟁조정위원회 담당 공무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Table.5와 같다.

Table 4. 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민간분야)

구 분	문 제 점	개 선 내 용
소음진동 규제법 일반	· 소음진동 보호범위에 재산권(건축물, 가축 등) 미 포함	· 모법에 재산권 추가(향후 추진과제) · 재산권 피해범위와 기준설정(건축물피해 및 가축 등 피해)
환경기준	· 교통소음 환경기준에 대한 만족도 낮음	· 도로소음·진동의 한도를 신설 및 기존도로로 구분하여 기준 재설정(법 제37조 “별표 10” 개정) · 적용대상지역의구분은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 과 동일하게 적용
	· 항공기소음 환경기준에 대한 만족도 낮음	· 새로운 항공기소음의 평가기준 및 척도 개발(향후 추진과제)
발생원별	· 현 제도에서는 공사장소음이 생활소음 범주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음	· 공사장소음을 생활소음의 범주에서 분리하여 별도 항목으로 운영관리(향후 추진과제)
	· 공사장소음 환경기준 및 관리체계에 대한 만족도 낮음	· 자동측정망 설치제도 의무화(법 제3조) · 소음표시제추가('08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
	· (일정규모 이상) 공사장 주변 소음전광판 설치 필요	· 공사장주변의 상시측량방법 의무화(법 제3조)
분쟁조정	· 공사장 주변 분쟁조정 결과의 합리성이 낮음	· 상설위원회 조직의 법제화 신설
방지시설	· 설치비용의 과부담으로 인한 방지시설 미설치	· 기술 및 재정지원확보 방안 법제화 신설
	· 방지시설 설치 후 관리 재원 및 인력의 부족	· 기술 및 재정지원확보 방안 신설

Table 5. 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공분야)

구 분	문 제 점	개 선 내 용
소음진동 일반	· 민간분야 종사자에 비하여 소음진동 담당 공무원들의 해당 직무 근속년수가 짧아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됨	· 종합계획의 수립을 법제화(신설)
	· 소음진동 관리 및 운영 현황에 대한 만족도 낮음(환경관련 민원의 대다수를 소음진동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반면,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	· 상설위원회 조직의 법제화(시행령 제10조)
	· 현 환경정책기본법 상 항공기 및 철도소음의 환경기준 부재	· 항공기 및 철도소음의 환경기준 제정(향후 추진과제)
교통소음진동 관리	·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도로 및 철도의 설계 및 배치 단계에서 부더의 조치가 필요	· 소음발생원 중심으로 법제도 개정(향후 추진과제)
공장 소음진동 관리	· 공정시험법상 공장소음 측정방법이 난해함.(가동상태 조건, 측정위치, 보정치적용 등)	· 현재 진행중인 용역결과를 토대로 법개정 추진
	· 공장소음도 생활소음규제기준과 같이 지역별-시간대별 구분 관리가 필요함.	· 현재 진행중인 용역결과를 토대로 법개정 추진
	· 현행 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제도의 실효성 없음	· 현재 진행중인 용역결과를 토대로 법개정 추진
생활 소음진동 관리	· 현 제도에서는 공사장소음이 생활소음 범주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음	· 소음발생원 중심으로 법제도 개정(향후 추진과제)
	· 공사장소음 환경기준 및 관리체계에 대한 만족도 낮음	· 자동측정망 설치제도 의무화(법 제3조) · 소음표시제 추가('08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
	· (일정규모 이상) 공사장 주변 소음전광판 설치 필요	· 공사장주변의 상시측량방법 의무화(법 제3조)
소음진동 기반시설 구축관리	· 소음지도 도입시 도시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의 높은 활용도 기대	· 소음지도 의무화 규정 도입(법 제 4조)
	· 소음지도의 도입시 각 지자체별 전문인력 및 재원 확보 곤란	· 기술 및 재원확보에 대한 방안 법조항 신설

6. 결 론

소음진동 환경정책 선진화를 위한 법,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선에 반영하였으며, 그중 주요한 개선 항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6.1 법의 명칭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소음진동관리법”으로 개정안 제시

6.2 법의 목적(법 제1조)

법 제1조를 수정하여 “~ 국민이 건강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함으로써 신체권을 보호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

6.3 법의 정의(법 제2조)

소음진동배출시설을 발생원대책, 전과경로대책 및 수음측 대책으로 세분화 시키고 항공기와 선박을 추가하였다.

6.4 측정망과 공정시험법

(법 제3조, 제4조 및 제6조 등)

철도 제작차에 대한 소음기준을 추가하고 자동측정망의 설치의무규정을 도입했으며 아울러 종합계획수립과 소음지도 의무화 규정, 기술 및 재원확보방안 신설과 소음부담금제 도입신설과 상설위원회의 법제화를 신설하였다.

6.5 허용기준과 허용한도

(법 제7조, 제21조 및 제27조 등)

교통소음한도를 기준과 신설로 구분하였으며, 동일건물내 실내사업장소음의 신설과 군부대사격장 소음기준을 추가했으며 아울러 공사장소음기준의 적용시간을 요일별로 차등 적용 토록 수정하였다.

6.6 배출시설, 방지시설 및 인력관리

(법 제8조, 제13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 등)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원도급자로 변경하고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의무자 범위를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가한 인가자,

공사관리자 및 시공사가 연대하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군사격장 소음을 추가시켜 군부대장이 책임토록 하였으며, 집시법의 소음제도에 대한 개선을 건의 하였다.

6.7 방지시설에 대한 체계설정

(법 제2조, 제23조 및 제29조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소음진동검사를 민간부문으로 확대 적용했으며 방음대책 수립 시 환경기술인 제도³⁾를 생활소음과 교통소음 등에도 도입하였다.

그리고 방지시설을 세분화 시키고 발생원대책 등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6.8 행정처분 및 벌칙규정에 대한 관리제도

(법 제49조 및 제 59조)

행정처분 기간 중 동일한 행위로 인한 가중처벌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행정처분 후 사후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방안과 방지대책에 대한 법조항을 신설하였다.

후 기

본 연구는 2007년도 환경부의 연구용역과제인 “소음진동 환경정책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를 수행하며 얻어진 결과이며,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환경부 생활환경과 관계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 1)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시행규칙
- 2) Kim, J.T, Park, Y.M, Jeon, J.C, Park, J.S, 2006 "Community Noise : New Guidelines and Policy", Proceedings of the KSNVE Annual Spring Conference.
- 3) Son, J.G, Kim, J.S, Kim, H.C, 2006, "Community Noise : Traffic Noise", Proceedings of the KSNVE Annual Spring Conference.